

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!

- 개정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시행 -

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,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오늘(3. 10.) 시행됩니다.

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이번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 등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,200만 원*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 하였습니다.

* 기존 하한 약 1,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, 월 평균임금(344만 원)의 24개월분('26. 上 기준)

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, 그 중 자녀·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.

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”라고 밝혔습니다. ☐

【첨 부】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사례 1부

담당 부서	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	책임자	과장 반지 (02-2110-3263)
		담당자	검사 강민정 (02-2110-4252) 법무관 공필규 (02-2110-3642)

1

범죄피해 구조금 증액

- 독립생계 자녀·손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를 늘려, 기존 구조금액 대비 2배~5배로 증가

사례1 - 독립생계 손자녀 사망시 조모 수령 유족구조금

- 피해자인 손자녀(월 평균임금 344만 원)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, 유족으로 독립생계 유지하는 조모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

(개정 전) 약 1,600만 원 $[=3,440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개월} \times (1/6)]$



(개정 후) 약 8,200만 원 $(=3,440,000\text{원} \times 24\text{개월})$

▶ 지급액 약 5배로 증가

사례2 - 독립생계 자녀 사망시 母 수령 유족구조금

- 피해자인 자녀(월 평균임금 344만 원)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, 유족으로 독립생계 유지하는 母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

(개정 전) 약 4,800만 원 $[=3,440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개월} \times (3/6)]$



(개정 후) 약 9,600만 원 $(=3,440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개월})$

▶ 지급액 약 2배로 증가

2

생계의존 유족의 순위 결정시 연령기준 삭제

- 생계의존 유족이라도 일정한 연령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후순위가 되었으나, 연령기준 삭제하여 생계의존 유족을 연령과 무관하게 선순위로 보호

사례 - 자녀 사망시, 함께 살던 55세 母와 따로 살던 父 수령 구조금

- 피해자(월 평균임금 344만 원)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, 유족으로 55세인 생계의존 母와 이혼 후 피해자와 교류가 없던 독립생계 父가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

(개정 전) ● 父와 母가 각각 약 2,400만 원씩 수령 $[=3,440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개월} \times (3/6) \times 1/2]$



(개정 후) ● 母가 단독으로 약 1억 2,300만 원 수령 $(=3,440,000\text{원} \times 36\text{개월})$

▶ 생계의존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 지급

3

범죄피해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기준 확대

○ 범죄피해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기준을 18세에서 24세로 확대

사례 - 父 사망시 생계의존 20세 자녀 수령 유족구조금

- 피해자(월 평균임금 344만 원)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,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

(개정 전) 약 4,800만 원 [=3,440,000원×28개월×(3/6)]



(개정 후) 약 1억 6,500만 원 (=3,440,000원×48개월)

▶ 지급액 약 3.5배 증가